

## **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**

1998. 7.22  
교육사회위원회

### **1. 심 사 경 과**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7월 14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7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7월 22일

(제150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### **2. 제안설명요지 (중등교육국장 최성태)**

#### **가. 제안이유**

종전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설치근거가 삭제되고,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## **나. 주요골자**

조례안 폐지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심의회 설치권한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 
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상위법개정(98.3)후 조례폐지(98.7)의 자연사유와 심의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 
설명이 필요할 것임

### 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